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

Compliance Program Regulations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은 TCC스틸 주식회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여 법 위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이하 ‘CP’규정이라 칭하며 TCC스틸 주식회사는 이하 ‘회사’ 라고 칭한다.

**제 2 조(원칙)**

본 CP규정은 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업무의 모든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용어 정의)**

CP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원칙을 지키도록 가이드

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을 의미한다.

3.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를 의미한다.

4.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CP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인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5. ‘자율준수운영팀’은 CP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하며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6. ‘자율준수편람’은 CP의 이해를 돕고 공정거래 관련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CP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지침서를 의미한다.

**제 2 장 규정 세부**

**제 4 조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CP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와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그 후임자는 자율준수운영팀의 팀장이 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본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최고경영자의 책임**

1. 최고경영자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집행의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보직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2.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CP를 운영함에 있어 인력과 예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명확하게 운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실천 의지를 선언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의 및 협력사 직원 등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자메일,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한다.

4.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CP운영의 저해 행위 등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최고경영자의 권한**

1. 최고경영자는 CP운영에 적합한 임원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최고경영자는 CP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배분할 권한을 가진다.

3. 최고경영자는 CP규정 미준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할

 권한을 가진다.

4.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에게 CP운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가 굳건한 자
2.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를 해석하여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음.)

1. 자율준수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자

1. 모든 부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CP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
2. CP운영에 있어서 기업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의견 표명이

가능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제 8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규정 및 자율준수편람의 수립∙제작∙운영∙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 자율준수편람과 관련된 교육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운영을 위한 자료와 정보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실태 관리 감독을 위한 실태 점검 및 조사 권한을 갖는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실태 개선을 위한 시정 요구 권한을 갖는다.
6.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구할 권한을 갖는다.
7.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CP운영을 위한 권한을 갖는다.

**제 9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1.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2. CP 활동계획 및 활동상황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반기 1회)
3. 자율준수 감사 실시 및 이사회 결과보고
4. CP운영 개선을 위한 보완사항 요구
5.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7. 임직원 제재를 위한 협의체 소집 및 운영 및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 등에 대한 조치 요청
8. CP 관련 임직원 교육
9. 기타 위 1.항 내지 9.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관리

**제 10 조 자율준수운영팀**

1. 자율준수운영팀은 회사의 감사팀으로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여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주관한다.
2. 자율준수운영팀은 업무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CP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 11 조 인사 불이익 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제 12 조 지원**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직원의 자율준수**

1.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회사의 CP규정, 사규 등 각종 지침 및 자율준수편람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고객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하며, 전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자율준수운영팀에 제보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없이 회사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 3장 CP 운영**

**제 12조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1.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최고경영자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3조 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공정거래 법규 및 CP규정을 준수해야 할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 공지 및 신규 배포하여야 한다.

**제 14조 CP교육 수립**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교육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2. 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반기 1회), 신규입사자 교육(채용시), 수시 교육(위반행위 발견 또는 필요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2.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3. 자율준수 관련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4. 기타 임직원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자율준수관리자는 CP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관련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거나 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조 내부감시체계 구축**

1.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관련 부서의 자율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해당 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2.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관련부서가 대책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직접보고체계, 내부고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상 업무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를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직접보고체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파악하였을 경우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에 대한 논의 없이 직접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최고경영자는 직접보고체계를 통한 보고 결과에 대해 문제점 해결 방안 탐색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7조 내부고발시스템**

1.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 제보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2.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제보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 사실에 관해 시정 목적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4. 내부고발시스템을 통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한 임직원에게는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8조 임직원 대상 제재**

1.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 협의 및 보고를 진행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사회적 처분을 받았거나 금전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제재를 당한 임직원이 이후에도 법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 사내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는 인사팀과 협의를 통해 인사규정 또는 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9조 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1. CP규정 준수 및 활용을 통해 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한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및 팀에 대해서 사규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CP 교육 실적 우수 임직원 또는 회사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인센티브를 격려금 등 포상, 상장 수여, 인사평가 가점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20조 효과성과 개선조치**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최소 연 1회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항목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CP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성과

(4) CP 관련 교육성과

(5) 법 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및 기업에 미친 영향

(6) 공정거래 담당의 CP 업무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7) CP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8) 공정거래 담당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1. 이사회는 평가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기준으로 삼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예산과 조직 운영의 변경, CP규정 개정 추진을 의결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 21조 기타**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 및 운용의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의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CP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3.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